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

[시행 2018. 6. 27.] [환경부고시 제2018 - 99호, 2018. 6. 27., 제정]

환경부(수자원정책과) 044 - 201 - 7622

1. 평가대상자산의 범위

가.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 · 장비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 · 장비를 포함함

나.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· 기기 또는 비품

다.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. 단,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.

라.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. 단,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 · 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 ·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.

마.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

바. 지하수개발 · 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 · 창고 또는 시설 · 장비 등의 보증금

2. 자산평가액 산정방법

가. 시설 · 장비, 차량운반구 · 기기 또는 비품, 사무실 · 창고(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“ 가 ”, “ 나 ”, “ 다 ” 목에 해당되는 자산)

1)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(이하 “ 감정평가업자 ” 라 한다)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

2)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 · 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 · 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3)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(등기부등본 등)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.

4)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(토지를 포함한다)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나. 토지(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“ 라 ” 목에 해당되는 자산)

1)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

?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?개별공시지가 확인서?를 통해 한다.

2)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“ 가목 3) ” 의 방법을 준용하며,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“ 가목 4) ” 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.

다. 현금(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“ 마 ” 목에 해당되는 자산)

?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. 다만,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임차 사무실 · 창고 또는 시설 · 장비 등의 보증금(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“ 바 ” 목에 해당되는 자산)

?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8 - 99호,2018.6.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